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0. 11 선고 2023가단563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전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23. 8. 23.

판결 선고2023. 10.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788,911원 및 그 중 34,733,212원에 대하여 2023. 5. 10.부터 2023. 7. 14.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임야 1,769.0m²에 관하여 2022. 8.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북 고창군 C 임야 1,769.0m²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2. 8. 30. 접수 제123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및 대위 변제 등

1)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피고 A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구분하는 경우에는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1	2018. 11. 1.	D은행 장성군지부	20,000,000원	2018. 11. 1.까지1) 이후 2022.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
2	2020. 3. 2.	D은행 장성군지부	20,000,000원	2025. 2. 20.까지

2) 피고 A이 2022. 8. 23.경 D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22. 12. 23. 피고 A을 대위하여 D은행에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7,256,675원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7,476,537원을 각 변제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2023. 5. 9. 기준으로 원금 34,733,212원(= 17,256,675원 + 17,476,537원)과 추가 보증료 5,139원 및 약정한 연 8%의 이율에 따른 손해금 1,050,560원의 합계인 35,788,911원(= 34,733,212원 + 5,139원 + 1,050,560원)이다.

나. 피고 A의 피고 B에 대한 부동산 증여

피고 A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사이에 2022. 8. 29. 피고 A 소유의 전북 고창군 C 임야 1,769.0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22. 8.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접수 제123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장성군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35,788,911원 및 그 중 원금 34,733,212원에 대하여 2023.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3. 7. 14.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사고에 따른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실제로 원고가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 A이 원고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위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A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A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이 생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피고 A이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를 피고 B로 변경한 후 위 부동산과 피고 B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변제한 후 남은 자금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 B의 위 주장을 피고 A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선행하여 보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고 A의 재산상태 및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곽희두

1) 이후 2022. 10. 31.까지로 연장되었다.